

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(변경)고시

고시 제 호

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(변경)고시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(직인)

정비 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
대상 소하천	총 000개소(주요 소하천:)		
총사업비	천 원	총길이	km
목적 및 정비 효과	재해예방		
	생활환경개선		

열람서류

- 소하천정비종합계획서
- 소하천 종합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